

삼척시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21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. .

제출자 : 삼척시장

1. 제안이유

-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현행 리·통장의 임명·위촉 제한 요건이 시대적 조류에 불합리하고
- 유능한 리·통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리·통장 연령을 종전에 「30세이상~60세이하」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「30세이상」으로 조정하고,
- 종전에 「남자로 위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자로 위촉」하던것을 앞으로는 「남·여 구분없이」로 조정하며,
- 종전에 「지역전투군, 재향군인 등의 자격요건」을 앞으로는 시대적 조류에 알맞도록 「건강한 자」로 조정하려는 것임.
※ 행정쇄신 위원회(내무부) 제6차 의결 사항임.

3. 참고사항

- 행정쇄신위원회 의결사항 : 별첨
- 예비군 제도·중 용어 개선내용 : 별첨
- 입법예고('95. 9. 11~9. 30) 결과 특이한 사항없음.
- 개정조례안 : 별첨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삼척시통·반설치조례중조례안

삼척시통·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통·반장) 중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통장은 통 관할구역내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30세이상의 건강한 남·여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통 관할구역안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위촉한다.
2. 반장은 관할구역안에서 6월이상 거주한 자 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·여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·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·면·동장이 위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통·반장) ②통·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통장은 관할구역내에 6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지역전투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 50세이상 60세이하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도 위촉할 수 있으며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.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통관할 구역안에 고정직업을 가진자를 우선 위촉한다. 반장은 관할구역안에서 6월이상 거주한 자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·여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·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·면·동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 전투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위촉한다. 	<p>제5조(통·반장) ②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통장은 통 관할구역내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30세이상의 건강한 남·여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통 관할구역안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위촉한다. 반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6월이상 거주한 자 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·여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·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·면·동장이 위촉한다.

행정쇄신위원회 의결사항

내부부

71-1296. 통장 위촉연령 상향 조정

코드번호 및 제안출처 : 나 05-0013, 광주광역시

현황 및 문제점

〈현황〉

- 통장의 연령에 관한 규정은 시군구 자치단체의 조례규정사항으로서
 - 지역에 따라 상한연령을 60세, 65세, 70세 또는 연령 상하한을 미규정하고 있고
 - 남·여를 구분하여 연령 상한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.

〈문제점〉

- 통장의 연령을 60세이하로 한정하거나 남·여를 차별규정함으로써 유능한 통장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남·여 평등의 시대적 조류에도 맞지 않음.

쇄신방안

- 통장의 위촉 연령상향조정 및 남·여 차별규정 폐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함.

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

- 관련조례 개정 검토 : '95. 하반기

동원 예비군제도 개선

동원참모부

3. 예비군훈련 개선

가. 훈련체계

연 차 제			연 한 제		
제1 전 투 군	1~4년차	동원훈련 동미훈련	4 년 차 이 내	동원 및 동 미 참 훈	동원 및 동 미 참 훈
	5~6년차	일반훈련 향방훈련			
지 역 전 투 군	1~6년차	일반훈련 향방훈련	5년차 이상	일반 및 향방훈련	일반 및 향방훈련
	7 년 차 이 상	소집점검			



※ 소집점검 : 1~4년차, 간부(7년 차 이내)

(2) 개선내용

- (가) 연령제(33세) → 연한제(군복무후 8년차 까지)
- (나) **용어사용** : 제1전투군, 지역전투군 → 예비군
- (다) **동원지정** : 면지역까지 확대, 동원지정후 잔여자원으로 향토방위 임무 수행

(3) 기대효과

- (가) 정예자원 예비군 편성으로 실질 전력화 가능
- (나) 개인별 복무기간의 형평성 유지
- (다) **예비군 복무부담 감소(2년)**